

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



경 상 북 도 의 회
(김대일 의원 외 10인)

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(김대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8. 11. 6.

발 의 자 : 김대일 · 김영선 · 김상현
남영숙 · 박미경 · 박승직
박용선 · 박차양 · 신호광
이선희 · 이춘우 의원(11인)

1. 제안이유

-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,
-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,
- 지난 10월 5일, 6일에 우리 지역을 지나간 태풍 '콩레이'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추경안을 조기 상정·심사코자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게 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시를 변경함.

2. 주요내용

- 출석요구일시
 - 2018. 11. 6(월) 14:00(제1차 본회의)
 - 2018. 11. 21(수) 11:00(제2차 본회의)
 - 2018. 11. 22(목) 14:00(제3차 본회의)
 - 2018. 11. 29(목) 11:00(제4차 본회의)
 - 2018. 12. 14(금) 11:00(제5차 본회의)
 - 2018. 12. 20(목) 11:00(제6차 본회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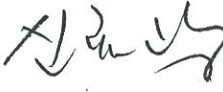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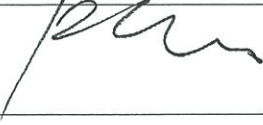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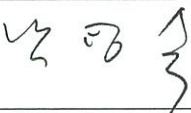
- 출석범위 :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「경상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
- 출석장소 :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42조
- 경상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-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

발의의원 서명부(제305회 제2차 정례회)

(제명: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)

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김래일		
박용선		
백지영		
진홍광		
김상현		
박승재		
오미애		
김명선		
문영숙		
이선희		
이정미		